

# 기업 통합ID서비스 이용약관

# 제 1 조(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용자 사이의 기업통합 ID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합니다.
- ② 기업통합 ID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및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③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별도로 체결한 계약은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기업통합 ID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는 기업인터넷뱅킹 ID 를 보유한 이용자가 본인 다수의 "인터넷뱅킹 ID 또는 고객정보(이하 통칭하여 'ID'라 함)"를 보유한 경우 등록한 통합 ID 로 로그인하여 본인의 개인 ID 또는 개인사업자 ID 의 계좌조회 및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2. "통합 ID"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ID 또는 개인사업자 ID의 계좌조회 또는 이체의 권한을 부여받은 ID를 말합니다.
  - 3. "부ID"란 통합ID에서 보유계좌의 조회 또는 이체가 가능하도록 등록된 별도의 ID를 말합니다.
  - 4. "계좌조회"란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통합 ID 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등록된 통합 ID/부 ID의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계좌이체"란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통합 ID 로 로그인하여 출금계좌로 등록한 통합 ID 및 부 ID 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6. "통합 ID 등록/해제 및 출금계좌등록"이란 계좌조회에서 조회 가능한 부 ID 등록/해제 및 계좌이체 를 이용하기 위한 통합 ID 의 출금계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 3 조(서비스 이용대상)

- 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통합 ID 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기업인터넷뱅킹을 가입한 개인사업자에 한 합니다.(단. 임의단체 제외)
  - 2. 부ID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본인명의의 개인, 개인사업자 및 관련서류 미제출 임의단체로,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란, 임의단체 확인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합니다.
    - 가. 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나.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 다. 조직구성원 명부
  - 3. 상기 1호 내지 2호에 해당 하더라도 안심스위치서비스 및 지연이체서비스에 가입한 ID는 통합 ID 또는 부 ID로 이용 불가합니다.
- ② 서비스 대상계좌는 원화요구불, 예적금, 신탁, 펀드, 대출 계좌이며, 공동명의계좌 및 보험/공제계좌는 제외합니다. 단, 계좌이체는 원화요구불계좌만 제공합니다.
- ③ 서비스 이용고객은 개인사업자 중 Master 고객에 한 합니다.

# KB국민은행

# 제 4 조(서비스 이용신청)

-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은행에 기업통합 ID 서비스 이용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함)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한 경우 이용계약이 완료됩니다. 다만 기업인터넷뱅킹에 가입한 이용자인 경우에 한해 통합 ID 와 부 ID 의 전자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계약이 완료된 이용자는 부ID의 계좌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은행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합ID 출금계좌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출금계좌 미등록ID(전자적 장치에서 출금계좌 등록 권한이 없는 ID)의 계좌도 기업통합ID 서비스의 출금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 제 5 조(서비스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계약 완료 시 은행은 통합 ID에 대해 통합 ID의 보안매체,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부 ID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만 대량이체, 급여이체, 타행 10억초과이체의 경우 부 ID계좌에서 출금이 불가합니다.

# 제 6 조(이체한도의 적용)

- ① 서비스 이용시에는 한 개의 계좌를 2개 ID(통합 ID 및 부 ID)에 출금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② 출금계좌가 통합 ID 에만 출금 등록된 경우에는 통합 ID 의 이체 한도를 적용합니다.
- ③ 출금계좌가 2개 ID(통합 ID 및 부 ID)에 모두 출금 등록된 경우 통합 ID로 로그인하여 이체한 금액은 2개 ID(통합 ID 및 부 ID)의 이체한도에서 동시에 차감됩니다. 또한, 부 ID의 이체한도가 0원이 되면 비록 통합 ID의 이체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부 ID의 한도를 차감할 수 없으므로 이체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이체한도는 출금계좌 등록된 각 ID의 이체한도 중 낮은 이체한도가 적용됩니다.

#### 제 7 조(수수료)

- ①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 ②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 8 조(거래의 제한)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밀번호 오류 안내 등 사전고지 후 본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다음 각 호 사유의 발생여부는 통합 ID 를 기준으로 하고 부 ID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합 ID 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1. 이용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된 접근매체를 제시하거나 입력한 경우. 단, 바이오정보 또는 저장장치 접근암호의 경우 5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
- 2.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전자금융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틀린 경우
- 3.12개월 이상 이체실적이 없어 장기미사용 이체제한에 등록되는 경우
- 4. 기타 은행에서 정한 인터넷뱅킹 ID 별 제한사항

# 제 9 조(보안서비스의 적용)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통합 ID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보안서비스를 신청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2. 이용자가 입금계좌를 지정한 경우
- 3. 기타 은행에서 정한 기업인터넷뱅킹 ID 별 보안서비스

# 제 10 조(서비스 해지)

- ① 서비스의 이용 해지는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처리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후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제 3 조의 이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이 은행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이용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 2. 고객이 서비스 신청 당시 제 3 조의 이용대상 이었으나, 이후 조건이 변경되어 이용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 11 조(손해배상 및 면책)

- ① 기업통합 ID 서비스 이용약관 관련 전자금융거래사고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에 따릅니다.
- ② 제 3 조에서 정한 대상 고객이 제 5 조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통합 ID에 대한 부 ID 계좌조회 및 이체권한 부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제 3 자와의 분쟁발생시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 12 조(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과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 ② 제 1 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 13 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제 14 조(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E-mail, 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이 제 1 항 및 제 2 항의 방법으로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 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의 이용신청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3)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